

조세관리법에 대한 시행규칙 초안에 관한 뉴스

재무부의 조세관리법 및 제 126/2020/ND-CP호 시행령을 안내를 위한 시행규칙 초안

2021년 3월 17일

개요

2021년 03월 02일 재무부는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베트남 조세관리법 및 조세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2020년 10월 19일 제 126/2020/ND-CP호 시행령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 초안을 공개하였다. 본 시행규칙 초안은 전자 상거래 사업 및 디지털 사업 등에 대한 세금신고, 세금계산, 세금배분, 세금 분쟁 처리, 연체이자 및 벌금, 세금 면제 및 감면, 세무조사, 조세관리에 대한 여러 규정을 보완한다.

본 뉴스를 통해 Tax compliance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행규칙 초안의 주목할 만한 내용을 요약 드리고자 합니다.

1.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종속적인 지점 또는 제조시설을 보유한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계산, 배분 및 납부
2.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 제조시설에 대한 법인세 신고, 계산, 배분 및 납부
3. 과다 납부세액, 납부지연가산세 및 벌금 과다납부 시 처리
4. 연간 세무조사 계획 공개
5. 외국인 공급자의 고정사업장
6.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공급자의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사업 활동에 관한 조세관리

Deloitte Vietnam은 시행 규칙 초안 내용에 관해 재무부에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행 규칙 초안에 대한 질의 사항 및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이를 Deloitte Vietnam에 알려주시면 저희는 내용을 종합하여 재무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관리법에 대한 시행규칙 초안에 관한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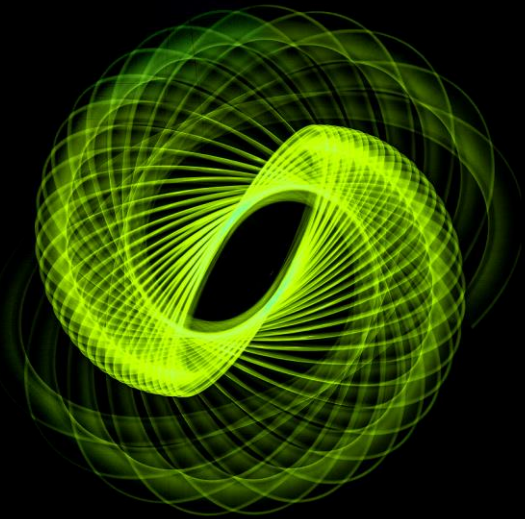
재무부의 조세관리법 및 제
126/2020/ND-CP호 시행령을
안내를 위한 시행규칙 초안

2021년 3월 17일

주목할 만한 내용

1. 타 지역에 종속적인 지점 또는 제조시설을 가진 납세자의 VAT 신고, 계산, 분배 및 납부

- 납세자는 본점 관할세무당국에 모든 종속적인 지점 및 사업장에 대한 VAT 신고서를 제출한다;
- 납부 금액의 지역별 배분은 법인의 총 과세매출액 기준 각 종속적인 지점/제조시설의 과세매출액 비율에 따른다. 과세매출액은 전년도에 발생한 실제 수익을 기준으로 하되, 전년도 수익이 없는 경우 납세자는 스스로 비율을 결정하고 해당 연도에 대해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연말시점에는 해당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역별 배분 비율을 계산하여 납부액을 재계산한다;
- 본사와 종속지점 간에 발생하는 내부매출 및 종속지점 간의 발생하는 내부 거래액은 VAT 과세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납세자가 생산 및 판매를 폐쇄된 프로세스로 수행한 경우, 매출은 송장 및 내부 운송장에 기록된 내부 이전가격에 따른다;
- 세금 납부: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지역별로 배분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각 지역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주목할 만한 내용 (co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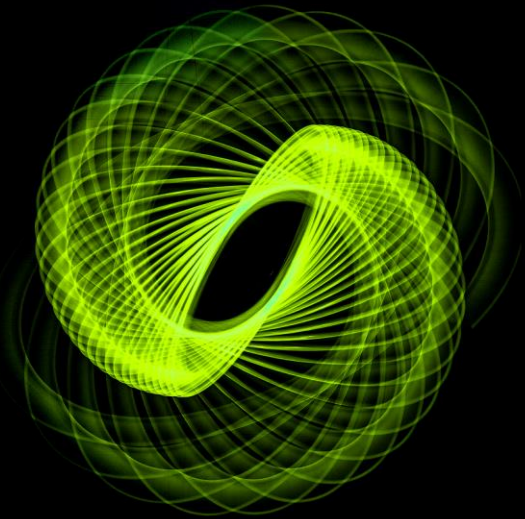
2. 주사무소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제조지점 법인세 신고, 계산, 분배 및 납부

- **분기별 납부:** 납세자는 분기별로 각 제조지점의 CIT를 제조지점 소재 지역 세무당국에 예정 납부한다.
- **법인세 정산**
 - 납세자는 본점 소재지 세무당국에 모든 종속지점(다른 지역에 있는 제조지점을 포함)을 포함하여 CIT를 확정신고하고, 각 제조지점별로 CIT액을 분배해야 한다;
 - CIT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제조지점의 경우 CIT 확정 신고 후 납부 세액을 배분받지 않는다. 납세자는 인센티브를 적용 받는 제조지점의 납부할 CIT액을 소재지 세무당국과 별도로 결정해야 한다;
- **CIT 납부 금액 분배**
 - 지역별 CIT 납부 금액은 법인 총비용 기준으로 각 제조지점의 비용 비율(%)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 분배비율의 근거가 되는 비용은 과세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다 (납세자의 종속적인 지점 간 내부거래로 발생한 비용 및 규정에 따른 CIT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제조지점의 비용은 제외);
 - 지역별 분배된 납부할 세액이 분기별 예정 납부 금액보다 큰 경우 납세자는 해당 지역 세무서에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분배된 납부할 세액이 분기별 예정 납부 금액보다 작은 경우 과다 납부세액으로 보아 규정대로 처리된다.

조세관리법에 대한 시행규칙 초안에 관한 뉴스

재무부의 조세관리법 및 제 126/2020/ND-CP호 시행령을 안내를 위한 시행규칙 초안

2021년 3월 17일



조세관리법에 대한 시행규칙 초안에 관한 뉴스

재무부의 조세관리법 및 제 126/2020/ND-CP호 시행령을 안내를 위한 시행규칙 초안

2021년 3월 17일

주목할 만한 내용 (cont.)

3. 과다 납부세액, 납부지연가산세 및 벌금 초과납부시 처리

아래와 같은 경우 납세자는 미납세액, 납부지연가산세 및 벌금("채무")과 상계처리하거나 이후 발생하는 납부할 세액, 납부지연가산세 또는 벌금("발생수익")에 충당할 수 있다:

- 과다 납부한 금액은 동일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항목에 대한 채무와 상계처리된다;
- 과납된 금액은 동일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동일 항목에 대한 발생수익과 상계처리된다;
- 과납된 금액은 동일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항목에 대한 다른 납세자(독립지점 또는 종속지점)의 채무 또는 발생수익과 상계처리된다;
- 환급, 환급 및 상계 : 위와 같이 처리한 이후에도 과다 납부한 금액이 있을 경우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환급 또는 환급 및 상계처리 요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다 납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4. 연간 세무조사 계획 공개

연간 세무조사 계획(조정계획 포함)은 세무조사 계획 승인 또는 조정에 대한 결정일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세무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거나 납세자 및 해당 납세 담당 세무당국에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통보해야한다.

5. 외국인 공급자의 고정사업장

베트남에 고정시설이 없는 외국인 공급자가 베트남내 개인 및 단체와 전자 상거래 사업 또는 디지털 기반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베트남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주목할 만한 내용 (cont.)

조세관리법에 대한 시행규칙 초안에 관한 뉴스

재무부의 조세관리법 및 제 126/2020/ND-CP호 시행령을 안내를 위한 시행규칙 초안

2021년 3월 17일

6. 베트남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공급자의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사업 활동에 대한 조세관리

- 외국인 공급자는 세무총국(GDT)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세무거래 및 세무등록을 하고 10자리 세금 코드를 부여받는다;
- 외국인 공급자는 직접 세금 등록, 신고 및 납부를 수행하거나 합법적인 세무 대리인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 납부할 세액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수익을 얻는 외국인 또는 외국 단체에 대해 적용되는 조세법(제12.2조 및 제13.3조, 제103/2014/TT- BTC호 시행규칙)에 따라 베트남에서 발생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 조정 신고: 신고한 세액에 대한 납부 기한이 경과한 경우 납부세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만 조정 신고가 가능하다;
- 외국인 공급자는 외화 또는 베트남동으로 국가 예산 계좌에 직접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신고서에 다른 세액을 과납한 경우 다음 세무연도에 납부할 세액과 상계처리한다.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Suresh G Kumar
Tax Partner
+84 28 7101 4400
ksures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Associate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About Deloitte Asia Pacific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Vietnam Company Limited and its subsidiaries and affiliate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